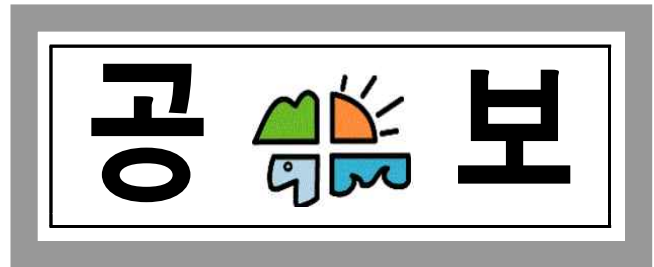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495호 2023년 10월 27일(금)

조례

- 속초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2
- 속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4
- 속초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 6
- 속초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 속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공고

-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19

입법예고

-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2
- 속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8
-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34
-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9

발행 : 시 민 소 통 담 당 관 (전화 : 639-3750, FAX : 639-2799)

속초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0월 27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조례 제3051호

속초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방지에 관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책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방지교육 및 홍보, 인식개선 사업
2.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의료·법률 등 지원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 장비 등 물품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스톡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스톡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내용으로 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스톡킹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톡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 의료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피해지원 관련 시설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톡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0월 27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조례 제3052호

속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속초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폐의약품 등”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폐의약품 등의 관리)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소, 시 소재 약국 등에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 비치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 약사회는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등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보건소 및 약국에서는 수거한 폐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 할 때까지 보관한다.

③ 시장은 보건소, 약국에서 수거된 폐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수거·운반·처리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불용의약품 발생을 방지하고 폐의약품 등을 올바르게 수거하기 위하여 시민,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시장은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0월 27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조례 제3053호

속초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관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화재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에게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지원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27조에 규정된 건축물로 한다.

제6조(지원기준) 시장은 보강 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1.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 또는 설치비
2. 「건축법」, 「건축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에 필요한 비용

제7조(보조금의 지원신청) 관리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등기사항 증명서 1부
5. 자부담 확보 내역 1부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은 속초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는 사업 완료 후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비용의 70% 범위에서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정산보고) ① 관리자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명세서 1부
2. 지출 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 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산보고서 등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지원) 시장은 속초시 관내 건축물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관련 안전교육,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속초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재안전성능 보장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건축물 현 황	위치			
	건축물명		건물용도	
	연면적		구조	
	층수		사용승인 일자	

신 청 내 용

총사업비	합계	보조금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속초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장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자 :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설계서(건축서, 산출내역서)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등기사항 증명서 1부
 5. 자부담 확보 내역 1부

속초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0월 27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조례 제3054호

속초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

속초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를 “속
초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주차위반자동차”를 “주차위반 차량”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2조 관련)

1. 견인료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상차량 구분	견인료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추가요금 (편도 매 1km 증가 시)
개인형 이동장치	20,000원	없음
2.5톤 미만	20,000원	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25,000원	1,400원
6.5톤 이상	40,000원	2,500원

2. 견인된 차량에 대한 보관료는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공고 비용은 당해 차량의 매각, 폐차를 위한 공고 등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산정한다.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0월 27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조례 제3055호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를 기준으로 구분 조사하되,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하여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으로 나누어 조사할 것
2. 주차수요는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 내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할 것
3. 조사는 주간 및 야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법 제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은 제1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이하인 지역에 대하여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특별히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2. 해수욕장 등 주요관광지

③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 또는 대문 허물기 등 자기주차장 갖기 사업
2.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3. 민영주차장 설치 지원
4. 그 밖에 주차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이유없이”를 각각 “이유 없이”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당일주차 :”를 “당일주차:”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차 :”를 “주차:”로 한다.

제6조 중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을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하역주차구간 지정)”을 “(노상주차장에서의 하역주차구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노상주차장중”을 “노상주차장 중”으로 한다.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②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2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모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을 “규모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노외주차장의 설치시설 종류)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2.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따로 정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13조제2항 중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을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으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전단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3조”를 “시행규칙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6월이내”를 “6월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은행법」 제86조”를 “「한국은행법」 제86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를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8대이하”를 “8대 이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규칙 제11”을 “시행규칙 제11”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20대이상”을 “20대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별표5호”를 “별표 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은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제2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보조)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로 부터 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
2. 이웃간 경계담장등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

② 보조금의 보조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 공영주차장(노상·노외주차장)				속초해수욕장 공영주차장(노외주차장)					
	최초20분	이후최초 10분 (1구획당)	이후 매10분당 (1구획당)	1일 주차 요 금	비수기(성수기외 기간)			성수기(7.1~8.31)		
					2시간이내	2~8시간	8~24시간	2시간이내	2~8시간	8~24시간
주차요금	무료	600원	300원	6,000원	1,000원	2,000원	4,000원	2,000원	4,000원	6,000원
월정기간	주간 75,000원				야간 56,000원			주·야간 120,000원		

(비고)

- 이 주차요금표는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 대형버스 및 화물차를 위해 별도 설치한 주차구획은 본 요금의 3배를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시 주차구획을 점유한 수만큼 배로 징수할 수 있다
-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가. 4월 ~ 10월 ⇒ 08:00 ~ 20:00
 나. 11월 ~ 3월 ⇒ 09:00 ~ 19:00
- 시장은 「자연공원법」 또는 「관광진흥법」에서 지정한 주차장 및 주차목적과 방법이 동일한 인근 공영주차장은 이용객의 편의와 요금체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별도 규정한 시설사용요금표에 준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주차요금의 할인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속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0월 27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56호

속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고 수탁자 선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하고, 제20조를 제21조로 하며,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위탁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공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위탁기간 만료일 조정이 필요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위탁기간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제2항의 위탁기간 만료 후에는 한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재위탁 할 경우 기존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계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위탁계약 시 어린이집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제6호로 한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보육교직원 대체인건비 및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
3. 어린이집 급식 비용
4. 어린이집 에너지 이용 비용
5.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토지수용 재결신청 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본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는 속초시 공원녹지과에 비치합니다.

2023. 10. 27.

속 초 시 장

다 음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 만리공원)
- 명칭: 도시계획시설(공원: 만리공원)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주소: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성명: 속초시

다. 사업시행지 : 속초시 교동 796-4번지 일원

라.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 별첨

마. 사업의 내용 : 도시계획시설 (공원:만리공원) 조성사업

바. 공고기간 : 2023. 10. 27. ~ 2023. 11. 13.

□ 수용대상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등기상주소	성명	송달주소	종류	
1	속초시 교동	798-61	전	661	661	곽유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영랑호반길 115-13, 101동 1403호 (금호동, 보람레이크더하임 아파트)	-	-	-	
2		산247-18 (산247-12)	임	392	392	박수용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영랑로4길 10, 비동 202호 (영랑동, 양우비치타워맨션)	속초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	압류	
3		산231-48 (산231-2)	임	5,067	5,067	편성현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4210 (교동)	-	-	-	

□ 수용대상 물건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등기상주소	성명	송달주소	종류	
1	속초시 교동	산247-18	창고	시멘트 벽돌	8.6	박수용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영랑로4길 10, 비동 202호(영랑동, 양우비치타워맨션)	속초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	압류	

의 견 서

1.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공원: 만리공원) 조성사업	
2.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전화번호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관내 공동주택(속초디오션자이, 속초동명휴티스오션시티)의 준공 및 입주 예정('23. 10~12월)에 따라 반 증설과 공동주택 신축으로 세대수가 감소된 통·반을 조정(통합)하여 원활한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조정(안 별표)
 - 동명동 1개통 5개반 축소

구 분		조 정 내 역		증 감 내 역
		조 정 전	조 정 후	
속초시 전체	통 수	249	248	감 1
	반 수	1,223	1,218	감 5
동명동	통 수	19	18	감 1
	반 수	90	85	감 5

4. 자치법규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사항

- 주 소: 우)2482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 연락처: 전화 033-639-2137 / 팩스 033-639-2590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033-639-21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동별의 총 및 동명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총	248	1,218	
동명동	18	85	

별표 중 동명동의 제2통 제5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통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명동	제 2 통	제 5 반	동명동	99-2	일원	
동명동	제 3 통	제 1 반	동명동		속초디오션자이	101동 아파트내 상가
		제 2 반	동명동		속초디오션자이	102동
		제 3 반	동명동		속초디오션자이	103동

별표 중 동명동의 제5통 제5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동	제 5 통	제 5 반	동명동		속초동명휴티스오션시티	
-----	-------	-------	-----	--	-------------	--

별표 중 동명동의 제10통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통 제6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9통란을 삭제한다.

동명동	제 10 통	제 1 반	동명동		속초롯데캐슬인더스카이	105동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속초롯데캐슬인더스카이	106동 아파트내 상가
동명동		제 3 반	동명동		속초롯데캐슬인더스카이	107동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속초롯데캐슬인더스카이	108동
동명동	제 11 통	제 6 반	동명동	450-217	일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동 별		통		반		비 고	동 별		통		반		비 고
총		249		1,223			총		248		1,218		
동명동		19		90			동명동		18		85		
명칭			구역				명칭			구역			
행정동	통	반	법정동	번지	세부구역		행정동	통	반	법정동	번지	세부구역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66-1	일원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66-1	일원	
동명동	제 3 통	제 1 반	동명동	89-2	일원		동명동		제 5 반	동명동	99-2	일원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341-1	일원		동명동	제 3 통	제 1 반	동명동		속초디오션자이	101동 아파트내 상가
동명동		제 3 반	동명동	349-3	일원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속초디오션자이	102동
							동명동		제 3 반	동명동		속초디오션자이	103동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306-2	일원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306-2	일원	
동명동	제 6 통	제 1 반	동명동	450-140	일원		동명동		제 5 반	동명동		속초동명휴티스오션시티	
							동명동	제 6 통	제 1 반	동명동	450-140	일원	
동명동	제 10 통	제 1 반	동명동	524-1	일원		동명동	제 10 통	제 1 반	동명동		속초롯데캐슬인더스카이	105동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427-5	일원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속초롯데캐슬인더스카이	106동 아파트내 상가
동명동		제 3 반	동명동	434-1	일원		동명동		제 3 반	동명동		속초롯데캐슬인더스카이	107동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450-215	일원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속초롯데캐슬인더스카이	108동

동명동	제 5 반	동명동	530-51 529	동명연립 대명빌라	동명연립가, 다 101~303 나 101~104,201~2 03, 301~304 대 명 빌 라 101~305, 대 명 빌 라 101~305
동명동	제 12 통	제 1 반	동명동	514	설악타워맨 썬(4호까지) 101 ~ 601 호 , 102~1002호 103 ~ 1303 호 , 104~1304호

동명동	제19 통	제 1 반	동명동		속초롯데캐 슬인더스카 이	105동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속초롯데캐 슬인더스카 이	106동 아파트내 상가
동명동		제 3 반	동명동		속초롯데캐 슬인더스카 이	107동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속초롯데캐 슬인더스카 이	108동

동명동	제 5 반	동명동	530-51 529	동명연립 대명빌라	동명연립가, 다 101~303 나 101~104,201~2 03, 301~304 대 명 빌 라 101~305, 대 명 빌 라 101~305
동명동	제 6 반	동명동	450-21 7	일원	
동명동	제 12 통	제 1 반	동명동	514	설악타워맨 썬(4호까지) 101 ~ 601 호 , 102~1002호 103 ~ 1303 호 , 104~1304호

<삭 제>

속초시 침수 방지사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침수 방지사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침수 방지사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주택 및 상가 등의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침수 방지사설 설치 비용의 지원 근거를 정하여 침수 방지사설 설치를 함으로써 침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안 제3조~제4조)
- 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안 제5조~6조)
- 라.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안 제7조~8조)
- 마. 설치규격 및 예산편성(안 9조~제10조)
- 바. 협력체계 구축·운영(안 제11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재난대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재난대응과(방재복구팀)
- 2) 연락처 : 전화 033-639-2403, FAX 033-639-2970
- 3) 전자문서 : wcshin0324@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재난대응과 방재복구팀(033-639-24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이며 연면적 330㎡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등)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그 밖에 시장이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기준)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 원 이하

2. 공동주택: 5백만 원 이하

제9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절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편성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 방지시설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명칭 변경

나.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연령제한(65세 이상) 폐지로 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3. 주요내용

- 가. 국가보훈처장 → 국가보훈부장관 수정(안 제3조, 안 제10조제2항)
- 나. 보훈명예수당 65세 이상 연령제한 폐지(안 제10조)
- 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수정(안 제10조제1항제3호)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복지정책과(북보훈지정책팀)
- 2) 연락처 : 전화 033-639-2312, FAX 033-639-2380
- 3) 전자문서 : kj1023@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33-639-23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거주한 65세 이상인”을 “거주하고 있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u>국가보훈처장</u> 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 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 ----- ----- ----- <u>국가</u> <u>보훈부장관</u> ----- ----- . ---- ----- -----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대상) ① 수당 등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4. ~ 6. (생략) ②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u>거주한 65세 이상인</u>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	제10조(수당 등의 지급대상) ① ----- ----- ----- 1. · 2. (현행과 같음)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u>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 제7조 ----- ----- 4. ~ 6. (현행과 같음) ② ----- ----- <u>거주</u> <u>하고 있는</u> ----- ----- . ----

로 한다. 다만, <u>국가보훈처장</u>이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 격자로 통보한 사람과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원받는 사람 은 제외한다. ③ (생 략)	<u>국가보훈부장관</u>----- ----- ----- ----- -----. ③ (현행과 같음)
---	---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2. 개정이유 : 속초시 의료급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그 기간을 명시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안 제8조) 연장 : 5년
 - 현행 2023.12.31.까지를 2028. 12. 31.까지로 연장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 2) 연락처 : 전화 033-639-2183, FAX 033-639-2380
- 3) 전자문서 : young7707@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033-639-21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u> <u>설치 및 운용조례</u> 제8조(존속기한)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까지</u> 로 한다.	<u>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u> <u>설치 및 운용조례</u> 제8조(존속기한)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8년 12월 31일까지</u> 로 한다.